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연월일 2008. 5. .
제출자 양주시장

□ 제안이유

“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위원회 규정 변경(안제4조, 안제6조, 안제8조, 안제9조)

위원회의 기능을 “양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는 하도록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상표의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규칙으로 되어 있던 상표의 사후관리 규정은 조례 제17조 “사용승인의 취소”와 관련되므로 규칙에서 삭제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①양주시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양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상표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일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
	담당·팀장 직위·성명	의회법무담당 김 정식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정식(820-206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 4 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u></p> <p>① 양주시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 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의회의원, 지역농협, 축협, 관련학계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u>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u> ①양주시의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양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p> <p>③~⑤ <삭제></p>
<p><u>제6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u>제6조(위원장의 직무)</u> <삭제></p>
<p><u>제8조(위원의 해촉)</u>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사망한 때</p> <p>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p> <p>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p> <p>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p>	<p><u>제8조(위원의 해촉)</u> <삭제></p>

<p><u>제9조(간사)</u>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p> <p>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p>	<p><u>제9조(간사) <삭제></u></p>
<p><u>제17조의2(상표의 사후관리) <신설></u></p>	<p><u>제17조의2(상표의 사후관리)</u></p> <p>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p>

[별표 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조례 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1월	"	"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	"
(7)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정지3월	승인취소	
(8)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	
(9) 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	"	
(10)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11)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승인취소		
(12)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1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1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16)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		